

의안번호	2219259
의 퇴 인	이훈기의원
회 답 일	2026. 7. 29.
추계번호	26B29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8조의11(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신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3항) 1. 제48조의8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7에 따라 징수한 이행강제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76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 중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한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제4항)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2.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3.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4.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5. 명예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된 후속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6.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구제 절차 지원 7. 정보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침해사고 피해예방 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8.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지원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8조의11(정보통신망침해 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은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 및 가산금, 침해사고 피해 확산방지 등을 위한 시정조치 등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침해사고 관련 과태료,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가산금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침해사고 피해 확산방지 등을 위한 시정조치 등 불이행시 이행강제금²⁾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한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된 후속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구제 절차지원 - 정보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침해사고 피해예방 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지원 - 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기금의 재원이 되는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 수입액, 정부의 출연금 등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기금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금 재원의 규모 역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금 재원 중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 및 가산금, 침해사고 피해 확산방지 등을 위한 시정조치 등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은 제도 시행 전(2026.10.1. 시행)으로 수입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 기금 재원 중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한 과태료’에 대하여, 2025년 수입실적이 있는 침해사고 관련 과태료의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침해사고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근거 법률	과태료 부과 사유	징수액
현행법 제76조제1항제6호의6 ³⁾	침해사고 미신고	352.5

- 1)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

[표 3]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26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운영) 24시간 365일 인터넷 이용 환경 이상징후 상시 모니터링·탐지를 통한 사이버위협 탐지·분석 및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 지원 - (사이버위협 공유·협력체계 운영) 다양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및 국내외 공동대응 협력체계 확대 - (사이버공격 예방체계 운영) 사이버공격을 유발하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 발굴·제거하여 기업의 안전한 디지털전환 지원 및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 운영) 해킹 공격의 경로로 악용되는 취약 SW에 대한 신속 삭제 및 보안패치 배포·자동 적용하는 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 운영 - (사이버침해 사고조사 분석체계 강화) 대형화·고도화되는 침해사고 대비 대응량 디지털 증거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실 구축	63,25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